

사 업	· · ·		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	법 인 명		
연 도	· · ·				사업자등록번호		

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계산	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	01					
	소득조정 금 액	⑩② 익 금 산 입	02				
		⑩③ 손 금 산 입	03				
	⑩④ 차 가 감 소 득 금 액 (⑩① + ⑩② - ⑩③)	04					
	⑩⑤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	05					
	⑩⑥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금산입	54					
	⑩⑦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(⑩④ + ⑩⑤ - ⑩⑥)	06					

② 과 세 표 준 계 산	⑩⑧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(⑩⑦ = ⑩⑦)						
	⑩⑨ 이 월 결 손 금	07					
	⑩⑩ 비 과 세 소 득	08					
	⑩⑪ 소 득 공 제	09					
	⑩⑫ 과 세 표 준 (⑩⑧ - ⑩⑨ - ⑩⑩ - ⑩⑪)	10					
	⑩⑬ 선 박 표 준 이 익	55					

③ 산 출 세 액 계 산	⑩⑬ 과 세 표 준 (⑩⑫ + ⑩⑬)	56					
	⑩⑭ 세	11					
	⑩⑮ 산	12					
	⑩⑯ 지 점 유 보 소 득 (「법인세법」 제96조)	13					
	⑩⑰ 세	14					
	⑩⑱ 산	15					
	⑩⑲ 합	16					

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	⑩⑲ 산 출 세 액 (⑩⑲ = ⑩⑲)						
	⑩⑲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	17					
	⑩⑲ 차 감 세 액	18					
	⑩⑲ 최저한세 적용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	19					
	⑩⑲ 가 산 세 액	20					
	⑩⑲ 가 감 계 (⑩⑲ - ⑩⑲ + ⑩⑲)	21					
	기 납 부 세 액	⑩⑲ 중간예납세액	22				
		⑩⑲ 수 시 부 과 세 액	23				
		⑩⑲ 원 천 납 부 세 액	24				
		⑩⑲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	25				
		⑩⑲ 소 계 (⑩⑲ + ⑩⑲ + ⑩⑲ + ⑩⑲)	26				
	⑩⑲ 신고납부전가산세액	27					
⑩⑲ 합	28						

	⑩⑲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29				
	⑩⑲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⑩⑲ - ⑩⑲ + ⑩⑲)	30				

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도 차익	⑩⑲ 등 기 자 산	31					
		⑩⑲ 미 등 기 자 산	32					
	비 과 세 소 득	⑩⑲ 비 과 세 소 득	33					
		⑩⑲ 과 세 표 준 (⑩⑲ + ⑩⑲ - ⑩⑲)	34					
		⑩⑲ 세	35					
		⑩⑲ 산	36					
		⑩⑲ 감 면 세 액	37					
		⑩⑲ 차 감 세 액 (⑩⑲ - ⑩⑲)	38					
		⑩⑲ 공 제 세 액	39					
		⑩⑲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(가산세 제외)	58					
		⑩⑲ 가 산 세 액 (동업기업 배분액 포함)	40					
		⑩⑲ 가 감 계 (⑩⑲ - ⑩⑲ + ⑩⑲ + ⑩⑲)	41					
		기 납 부 세 액	⑩⑲ 수 시 부 과 세 액	42				
			⑩⑲ () 세 액	43				
			⑩⑲ 계 (⑩⑲ + ⑩⑲)	44				
⑩⑲ 차감납부할세액 (⑩⑲ - ⑩⑲)	45							

⑥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⑩⑲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59				
	⑩⑲ 세	60				
	⑩⑲ 산	61				
	⑩⑲ 가 산 세 액	62				
	⑩⑲ 이 자 상 당 액	63				
	⑩⑲ 납부할세액 (⑩⑲ + ⑩⑲ + ⑩⑲)	64				

⑦ 세 액 계	⑩⑲ 차감납부할 세액 계 (⑩⑲ + ⑩⑲ + ⑩⑲)	46				
	⑩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	57				
	⑩⑲ 분납세액 계산범위액 (⑩⑲ - ⑩⑲ - ⑩⑲ - ⑩⑲ - ⑩⑲ + ⑩⑲)	47				
	⑩⑲ 분 납 할 세 액	48				
	⑩⑲ 차 감 납 부 세 액 (⑩⑲ - ⑩⑲ - ⑩⑲)	49				

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⑩란부터 ⑫란까지, ⑫란, ⑬란 및 ⑭란에 비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, ⑮ 선택표준이익란에 선택표준이익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)의 ⑦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, ⑪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"0" 보다 작은 경우 ⑬ 과세표준란에는 ⑮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~⑮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2)의 ⑩양도차익, ⑫금액,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※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4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⑩란부터 ⑪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- * 예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-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: (포괄)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. 다만,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, 당기순손실은 "△" 등 음(-)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
 - 소득조정금액란(⑩, ⑪):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⑫ 익금산입란 및 ⑬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.
 - ⑮ 기부금 한도초과액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의 ②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이월결손금란: "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"의 II.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⑬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.
 - ⑮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②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- ⑮ 소득공제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의 ⑬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- 세율란(⑮, ⑯, ⑰):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(⑮란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) 1개만을 적습니다.
 - ⑮ 지점유보소득란: 「법인세법」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(별지 제49호서식)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차감세액란: ⑮란의 산출세액에서 ⑮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- ⑮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란을 적습니다.
 - ⑮ 중간예납세액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산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6서식)의 ⑮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[별지 제8호서식(을)]"의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⑮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 - 가산세액란(⑮, ⑯):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"에 따라 적습니다(중간에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).
 - 기납부세액 계란(⑮, ⑯)
 - 가.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(중간에납)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, 수시부와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,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"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(별지 제11호서식)"의 ⑧ 공제(환급)신청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.
 - ⑮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('산출세액'에서 '공제감면세액'을 차감한 후의 세액(가산세는 제외함)을 적습니다.
 - ⑮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: "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(별지 제52호의4서식)"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⑤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⑤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④ 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 - ⑮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⑥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를 합산하여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①선박명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.
2. ②선박순톤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.
3. ④운항일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.
4. ⑤사용료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를 기입합니다.
5.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
6.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.

사 업 연 도	· · ·	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	법 인 명	
	~		사업자등록번호	
	· · ·			

[illegible]

작성 방법

1. ②구분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"토지",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"건물"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"기타"로 적습니다.
2. ⑪유형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,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·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"농지"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"기타"로 적습니다.
3. ⑭세율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.
예시)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: 40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제3호)